

---

# 제1기 제16차 전국위원회

2026년 8월 22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

14 : 00 ~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

# 회의 및 자료집 순서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진행요원 지정

회순통과

---

## 안건 사항

1. 사회민주당 최고위원제 도입에 관한 당헌 개정안 의결의 건
2. 당규 개정 및 당헌 개정안 당원총투표 실시의 건

---

## 보고 사항

1. 청년위원회(준) 위원장 임명



## 전국위원 명단

| 구분          | 명단                                  |
|-------------|-------------------------------------|
| 당대표         | 한창민                                 |
| 부대표         | 정혜연                                 |
| 당 소속 국회의원   | (한창민)                               |
| 광역 시도당위원장   | 송치용 최영규 (정혜연) 김보경 박형규<br>(*지역 가나다순) |
| 사무총장        | (김보경)                               |
| 권역          | 전국위원                                |
| 경기인천(1)     | 서정범                                 |
| 대전,충청,세종(2) | 이훈 최혜선                              |
| 서울(2)       | 이병은 고석균                             |
| 영남(2)       | 국민수 (최영규)                           |
| 호남제주(1)     | 박봉리                                 |
| 지명직 전국위원(2) | 강점석 박환수                             |
| 합계          | 15명                                 |



---

## 안건 사항

1. 사회민주당 최고위원제 도입에 관한 당헌 개정안 의결의 건
2. 당규 개정 및 당헌 개정안 당원총투표 실시의 건

---

## 보고 사항

1. 청년위원회(준) 위원장 임명

## [안건 1] 사회민주당 최고위원제 도입에 관한 당헌 개정안 의결의 건

[주문사항] 당헌 당규에 의거, 2기 지도부 최고위원제 도입 등과 관련되어 당원총투표를 실시할 <사회민주당 당원 일부개정안>을 검토 후 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관련 규정

#### [당헌]

#### 제3장 당원총투표

##### 제8조(당원총투표)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대표단 회의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개정 2024. 12. 30.>
4. ...
5.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총투표

③ 전국위원회가 발의한 당원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장 전국위원회

#####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10.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 2. 취지

—창당 2년 평가 등의 과정에서 당적 합의 수준, 당무 집행의 역량과 속도를 높일 것이 요구됨.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당 지도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부대표제를 최고위원제로 개편하여 당대표를 보좌하는 부대표 중심의 지

도체계를 주요 정책과 당무를 함께 심의·의결하는 최고위원회 중심의 집행지도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 최고위원회의 지위·구성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당대표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 소집·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당의 집행 및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아울러 당원총투표, 전국위원회, 의원총회, 윤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문의 체계와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3. 경과

- 지방선거 이후 향후 2028년 총선을 앞둔 사민당 2기 지도체제 및 당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확대전략회의를 2차례 진행함. 이에 최고위원제에 대한 안이 제안됨.
-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기 지도체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함.
- 대표단-시도당연석회의에서 <당내 의견 수렴 결과>, <대표-부대표 체제와 최고위원제 비교>, <최고위원제 실시 정당들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사회민주당에 맞는 최고위원제(안)을 준비하기로 함.
- 최고위원제 실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바, ‘제2차 당헌·당규 개정 TF’를 구성하고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함.

### 4. 당헌·당규 개정 TF 운영 과정

- 현 사회민주당 당헌·당규와의 합일성을 높이고 개정안 마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당헌·당규 TF’ 위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함.
- 최고위원제 실시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을 우선 점검하고, 이에 대해 대표단, 시도당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침. 또한 사회민주당과 유사한 진보정당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당헌 개정안’을 마련함.

## 5. 사회민주당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                                                |                                                                                                                                                                                                                                                                                                                        |
|------------------------------------------------|------------------------------------------------------------------------------------------------------------------------------------------------------------------------------------------------------------------------------------------------------------------------------------------------------------------------|
| <p>가. 부대표제를 폐지하고 최고위원제를 도입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부대표 및 대표단회의 체계를 폐지하고,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설치함.</li> <li>-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구성함.</li> </ul>                                                                                                                                                      |
| <p>나. 최고위원의 선출·구성 및 임기를 규정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출직 최고위원 2인은 당대표와 분리하여 당원투표로 선출하도록 함.</li> <li>-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 의결로 충원하도록 함.</li> <li>-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출하도록 함.</li> <li>-임명직 최고위원 1인은 사·도당위원장 연석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함.</li> </ul>                          |
| <p>다. 최고위원회를 주요 정책과 당무의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주요 당무를 심의·의결하고 당무 전반을 조정·감독하도록 함.</li> <li>-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및 안건 발의, 전국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등의 권한을 부여함.</li> <li>-사·도당의 사고당부 판정 및 후속조치, 상설·특별위원회의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등의 권한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li> <li>-국회 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 당규에 따른 비상징계 등 주요 집행 권한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li> </ul> |
| <p>라. 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주재하고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함.</li> </ul>                                                                                                                                                                  |

|                                                |                                                                                                                                                                                                                                                                                                                                        |
|------------------------------------------------|----------------------------------------------------------------------------------------------------------------------------------------------------------------------------------------------------------------------------------------------------------------------------------------------------------------------------------------|
| <p>마. 당대표의 선출·임기 및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체계를 정비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대표는 당원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li> <li>-새 당대표 선출 전 또는 당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를 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li> <li>-권한대행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도록 함.</li> </ul>                                                                                                     |
| <p>바.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기구를 최고위원제에 맞게 정비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위원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최고위원회에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권과 안건 발의권을 부여함.</li> <li>-임명직 전국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함.</li> <li>-사·도당 사고당부 판정 등 종전 전국위원회 또는 대표단이 담당하던 일부 집행적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조정함.</li> <li>-예산결산위원회·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li> </ul>         |
| <p>사. 그 밖의 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당헌의 체계와 문구를 정비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원총투표의 대상·제한과 발의·진행절차 및 의결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한 의미로 개정함.</li> <li>-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도록 특례를 마련함.</li> <li>-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재 권한 및 불복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함.</li> <li>-직책당비 결정 절차와 동시당직선거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li> <li>-중복되거나 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을 통합·삭제하고, 용어와 표현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함.</li> </ul> |

## 6. 의결안

-<사회민주당 당헌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안건 2] 당규 개정 및 당헌 개정안 당원총투표 실시의 건

**[주문사항]** 당헌 당규에 의거, <사회민주당 당헌 일부개정안>에 대한 당원총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당규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당원총투표 실시를 의결해주시옵시오.

### 1. 관련 규정

#### [당헌]

##### 제3장 당원총투표

##### 제8조(당원총투표)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대표단 회의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개정 2024. 12. 30.>

③ 전국위원회가 발의한 당원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규]

##### 제3호 당원총투표

##### 제1장 총칙

##### 제2조 (당원총투표의 구분)

① 전국위원회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헌 제8조(당원총투표) 제②항 제3호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총투표를 말한다

##### 제3조 (당원총투표 사무의 관리)

① 당원총투표와 관련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제3장 당원총투표의 절차

##### 제10조 (당원총투표의 형식)

①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취지 및 경과

- 1기 지도부 임기가 만료되고(7.2) 타 정당에 비해 차기 지도부 출범이 늦은 바, 최고위원제 관련 <일부개정 당헌안>에 대한 당원총투표를 신속히 실시하고자 함.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총투표 형식 및 일정을 제출함.
- 관련하여 현행 당규상 공고일과 투표일 사이의 기간과 투표 보장 기간이 경직되어 있는 바, 원 당규의 취지를 보장함과 동시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당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3. 당헌 개정 당원총투표 일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 일시            | 내용                  | 비고                                           |
|---------------|---------------------|----------------------------------------------|
| 8/22(토)       | 당헌 개정 당원총투표 공고      | *선거권 부여 7월 31일 기준                            |
| 8/24(월)~26(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 *당헌 개정 주요 사항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8/26(수)       | 선거인명부 확정            |                                              |
| 8/27(목)~29(토) | 투표 및 개표(3일)         | * <당규 제3호 제3장 제12조> <당규 제9호 제10장 제44조> 개정 필요 |

## 4. 의결안

- 1) 다음의 당규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 당규            | 현행                                                                             | 개정안                                                                                             |
|---------------|--------------------------------------------------------------------------------|-------------------------------------------------------------------------------------------------|
| 제3호 제3장 제12조  | 당원총투표의 투표일은 제②항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상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 당원총투표의 투표일은 제 ②항의 공고일로부터 <u>5일</u>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상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
| 제9호 제10장 제44조 | 투표 기간은 5일로 하되, ARS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 ① 온라인 투표 기간은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br>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종료 후 ARS모바일 투표를 |

|      |      |                                                                  |
|------|------|------------------------------------------------------------------|
|      |      |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ARS모바일 투표 기간은 1일 이상 2일 이하로 한다.                    |
| <부칙> | (신설) | 부칙 <2026. 8. 22. 제2호><br>본 당규는 2026. 8. 22.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

2) <사회민주당 당헌 일부 개정안>에 대한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당원총투표에 대한 사항은 당규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당원총투표 공고 주요 내용**

투표 형식 : 찬반 투표

투표 일정 : <3. 당헌 개정 당원총투표 일정> 참조

투표권 : 2026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당원. 주권당원 가중치 100%, 참여당원 가중치 30%

## **보고 1**

### 청년준비위원회(준) 위원장 임명의 건

—공석이었던 청년준비위원장에 청년준비위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양윤찬 운영위원을 임명함.

## [별지]

당헌 제 호

### <사회민주당 당헌> 일부개정당헌안

<사회민주당 당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단 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진행절차”를 “대상 및 제한, 발의절차, 진행절차”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대표단 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선출직 전국위원 및 임명직 전국위원

⑤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당대표는 15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⑨ 임명직 전국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한 자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 10% 이내에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중 “대표단”을 “당대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위) 당대표”를 “당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 당대표의 권한의 다음의”를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 4. 임명직 전국위원의 추천 및 임명

#### 5. 중앙당 당직자를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할 권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당대표의 선출과 임기)

- ① 당대표는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당규가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기구의 장을 선출한다.
- ④ 선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최고위원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임명직 최고위원

제13조의 제목 “(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를 “(최고위원의 선출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당대표와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당대표 및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2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분리하여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 ②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정원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의의 의결로 임명한다.
- ④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⑤ 임명직 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 심의, 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전국위원회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
5.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6. 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판정 및 당규로 정하는 후속조치 권한
7. 상설 및 특별위원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8. 국회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
9. 당규에 따른 비상징계
10.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5장제1절의2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집과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 주재한다.

- ②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과반수가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최고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고자 할 때는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최고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 중 “부대표와”를 “최고위원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기타)”를 “(상설 및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표단 회의”를 “최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의 대의기구가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 또는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최고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을 사고당부로 판정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지위와 구성)”을 “(지위와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무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을 “운영, 역할 및 기능”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원내대표로 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2인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전국위원회”를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한다.

제3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국위원회”를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로, “운영”을 “운영,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재 및 불복절차”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2. 선거효력의 판정권
3.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재 권한
4.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별규정”을 “당헌·당규에 달리 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원총투표의 경우, 투표 참가 인원이”를 “당원총투표는”으로, “되어야 한다”를 “투표에 참가하여야 성립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규로 이보다 높은 투표율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그 선거일 전에 시·도당을 창당하거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동시당직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시당직선거의 대상에서 제외된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른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와 동시에 만료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당원총투표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는 이 당헌 및 이에 따른 당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당직자 및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당직자와 각급 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당헌 및 당규에 따른다.

② 이 당헌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동

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에 종료하고, 그 임기 종료까지 대표단회의는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기 종료까지 당대표, 부대표 및 대표단회의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 및 당규를 적용한다.

④ 이 당헌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전국위원회와 재임 중인 전국위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되는 전국위원회 구성원의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종전 당헌 및 당규를 적용한다.

제4조(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당헌 시행일 전일까지 창당된 시·도당 또는 설치된 지역위원회에서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 당헌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직책당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헌 시행 이전에 대표단회의가 정한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당규 또는 그 당규에 따라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를 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이를 새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6조(종전 당규의 효력) 이 당헌 시행 당시의 당규는 이 당헌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당원총투표) ① (생략)                                           | 제8조(당원총투표)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u>경우</u>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 ② ----- <u>경우</u> <u>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u> -----<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u>대표단 회의</u>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 3. <u>최고위원회</u> -----<br>-----                         |
| 4. 5. (생략)                                                  | 4. 5.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당원총투표의 <u>진행절차</u>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 <u>대상 및 제한, 발의절차, 진행절차</u> -----.              |
|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생략)                                          | 제9조(지위와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② -----<br>-----.                                      |
| 1. <u>당대표와 부대표</u>                                          | 1. ----- <u>최고위원</u>                                   |
| 2. 3.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
| 4. <u>선출직 전국위원</u>                                          | 4. <u>선출직 전국위원 및 임명직 전국위원</u>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6. <u>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u> | <삭 제>                                                  |
|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③ -----<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u>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지정 의결</u>                               | <삭 제>                                                  |
| 6. ~ 9. (생략)                                                | 6. ~ 9. (현행과 같음)                                       |
| 10. <u>대표단 회의</u> 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10. <u>최고위원회</u> -----<br>-----                        |

11. · 12. (생 략)

④ (생 략)

⑤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 ⑧ (생 략)

<신 설>

#### 제1절 대표단

제10조(당대표) ① (생 략)

②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③ (권한) 당대표의 권한의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지명직 전국위원의 추천

5. 중앙당 당직자 임면

6. (생 략)

7.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8. (생 략)

제11조(부대표) ① 당은 3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고 1인의 지명직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지위와 권한)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표와 협의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

11.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당대표는 15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임명직 전국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한 자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 10% 이내에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 제1절 당대표

제10조(당대표) ① (현행과 같음)

② 당대표-----  
-----.

③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  
-----.

1. ~ 3. (현행과 같음)

4. 임명직 전국위원의 추천 및 임명

5. 중앙당 당직자를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할 권한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과 같음)

제11조(당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

를 보좌한다.

## 2.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 <신 설>

제12조(대표단 회의) ① 대표단 회의는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요 당무에 대해 협의한다.

③ 대표단 회의는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신 설>

### <신 설>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당규가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기구의 장을 선출한다.

④ 선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절의2 최고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임명직 최고위원

제13조(최고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2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분리하여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정원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14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는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부대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는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  
④ 당대표와 부대표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 설>

③ 최고위원-----  
-----.  
-----  
----- 최고위원-----  
-----.

④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⑤ 임명직 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4조(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주요 법률안 및 정책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 심의, 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전국위원회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
5.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6. 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판정 및 당규로 정하는 후속조치 권한
7. 상설 및 특별위원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8. 국회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
9. 당규에 따른 비상징계
10.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14조의2(소집과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 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과반수가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최고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고자 할 때는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2조(지위와 구성) ①·② (생략)

③ 시·도당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자치 규약을 둘 수 있다. 단, 강령과 당헌에 현저히 위배되는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해 대표단의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전국위원회는 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지위와 구성) ① (생략)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당무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④ 최고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략협의회) -----  
-----  
----- 최고위원  
과 -----  
-----  
-----.

제21조(상설 및 특별위원회) -----  
-----  
-----  
-----.  
----- 최고위원회-----.

제22조(지위와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의 대의  
기구가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 또는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최고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을 사고당부로  
판정할 수 있다.

제27조(지위와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국위원회 -----  
-----  
-----.

③ ----- 운영, 역할  
및 기능-----.

<삭제>

|                                                                                                                                                                                                                                                                                                                                                                                                                                                                                                                                                                  |                                                                                                                                                                                                                                                                                                                                                                                                                                                                              |
|------------------------------------------------------------------------------------------------------------------------------------------------------------------------------------------------------------------------------------------------------------------------------------------------------------------------------------------------------------------------------------------------------------------------------------------------------------------------------------------------------------------------------------------------------------------|------------------------------------------------------------------------------------------------------------------------------------------------------------------------------------------------------------------------------------------------------------------------------------------------------------------------------------------------------------------------------------------------------------------------------------------------------------------------------|
| <p><u>후보의 선출</u></p> <p>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br/>회의 배정</p> <p>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 심의, 의결</p> <p>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의결</p> <p>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p> <p>9.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p> <p>제29조(원내대표) ① ~ ④ (생략)</p> <p><u>&lt;신설&gt;</u></p> <p>제35조(예산결산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36조(윤리위원회) ①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 ④ (생략)</p> <p>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p> | <p>제29조(원내대표)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원내대표로 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b>2인 이상</b>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제35조(예산결산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p> <p>제36조(윤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한다.</p> <p>⑤ 위원 -----<br/>-----<br/>-----<br/>-----.</p> <p>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p> |
|------------------------------------------------------------------------------------------------------------------------------------------------------------------------------------------------------------------------------------------------------------------------------------------------------------------------------------------------------------------------------------------------------------------------------------------------------------------------------------------------------------------------------------------------------------------|------------------------------------------------------------------------------------------------------------------------------------------------------------------------------------------------------------------------------------------------------------------------------------------------------------------------------------------------------------------------------------------------------------------------------------------------------------------------------|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윤영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재정 구성) ①·② (생략)

③ 직책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대표단 회의가 정한다.

④ (생략)

제43조(의결정족수 및 선출방법) ① 당의 각급 회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③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 및 당원총투표  
의 경우, 투표 참가 인원이 주권당원의 100  
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략)

제46조(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한을 가진다.

## 1.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 2. 선거효력의 판정권

### 3.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재 권한

#### 4.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⑥ ----- 최고  
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 운영,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제재 및 불복절차 --  
 二.

제39조(재정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결정족수 및 선출방법) ① -----  
----- 당헌·당규에 달리 정함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당원총투표는 \_\_\_\_\_  
 \_\_\_\_\_  
 --- 투표에 참가하여야 성립한다. 다만,  
당규로 이보다 높은 투표율을 정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동시당직선거) ① -----  
-----  
-----  
-----  
-----.

<단서 삭제>

|                           |                                                                                                                        |
|---------------------------|------------------------------------------------------------------------------------------------------------------------|
| <p><u>&lt;신 설&gt;</u></p> | <p>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그 선거일 전에 시·도당을 창당하거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동시당직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p> |
| <p><u>&lt;신 설&gt;</u></p> | <p>③ 제2항에 따라 동시당직선거의 대상에서 제외된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른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와 동시에 만료된다.</p>             |